[물류시설용지]

-허용용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호 의 용도
  - 제18호의 창고시설(정고,집배송시설)

[산업시설용지]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 -산업 1~2,5,7,9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25, C26, C27, C28, C29, C30, C31
  - -산업 3~4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3, C16, C32
  - -산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0, C11, C33
  - -산업 8, 10~14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8, C20, C21,C23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호 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며, 공장의 연면적 20%이내)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장고,집배송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복합용지]

■ 생산관련시설(복합용지 연면적의 50%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0~C11, C13, C15~C16,C18~C21,C23,C25~C3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임주제한업종 제외)
  - ※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

■ 주거,지원시설(복합용지) 연면적의 50%미만
단, 주거시설의 경우 복합용지 연면적의 30%이하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호 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육의 절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증포판매소, 제임제공업소, 장의사,제조업소,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옥외철탕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제외) 및 「주정보육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 근린생활시설은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층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이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호 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 설, 도축장, 도계장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주차장용지]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 의 30% 미만
  - 부속용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의 단서에 따른 용도로써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따름
- 주차장1,5는 공용주차장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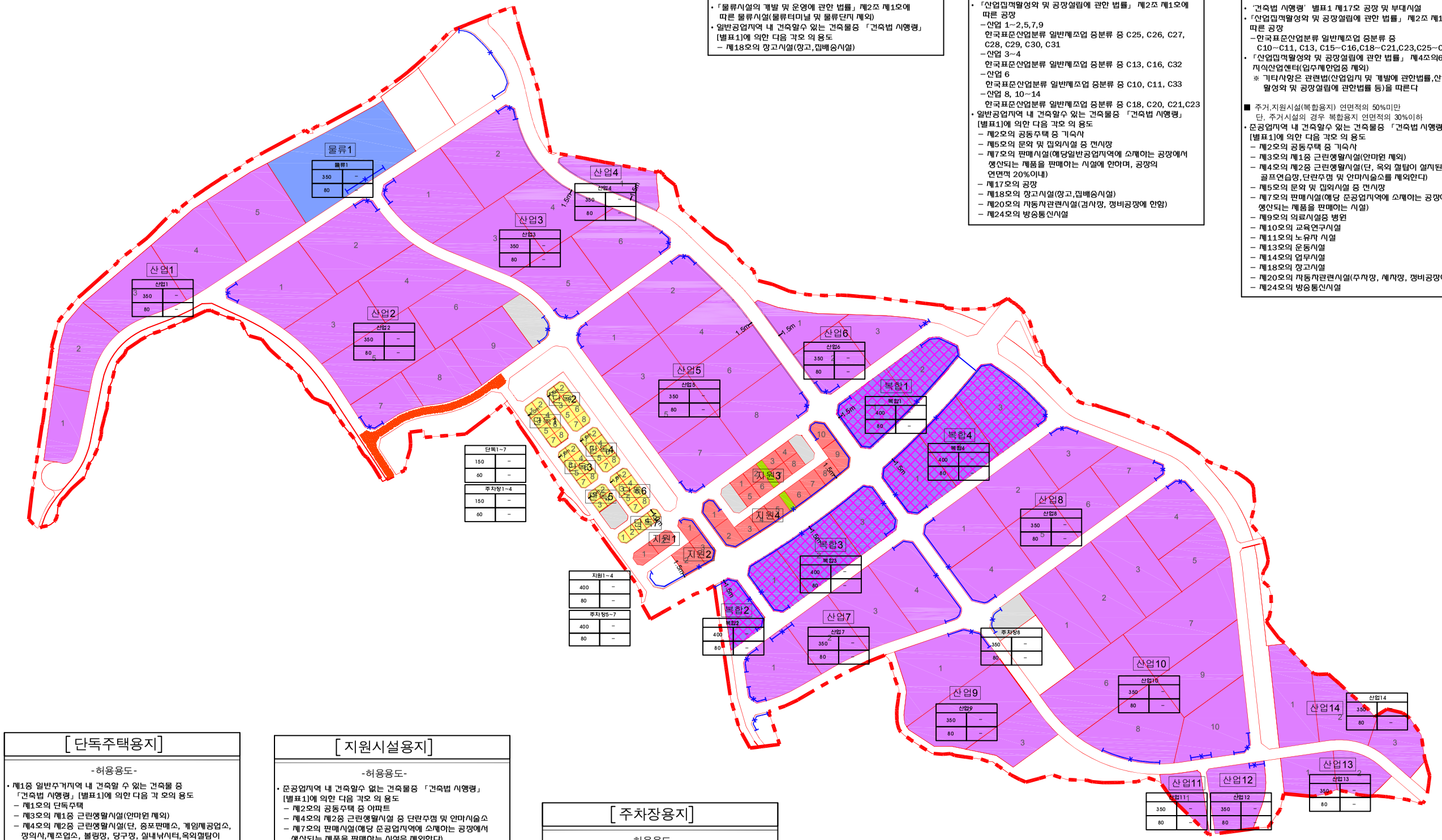

PROJECT TITLE

평촌일반산업단지계획

DRAWING TITLE

건축물의 용도 및 배치 등에 관한 결정(변경)고시도

LEGEND

- 구 역 계
- 토지이용계획선
- 획 지 선
-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복합시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 주차장용지
- 산업1 가구번호
- 1 획지번호
- 건축물의 용도
- 건축한계선
- 진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용적률	최고높이/층수
건폐율	최저높이/층수

금회 고시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대전광역시고시 제2016-191호

서기 2016년 12월 16일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대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과학특구과	과학특구과	과학특구과	과학특구과
직위	전무이사	담당자	담당	담당	과장
직명	도시계획기술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서기관
성명	이 동 규	윤 길 재	황 승 순	황 승 순	김 영 민
확인인					

SCALE : 1 / 3,000

N

0 50 100 200